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78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8,859,860원, 지방교육세 10,933,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643,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가.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2012. 11. 2. [redacted]시 A 대 2,4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콘크리트벽식구조 아스팔트쉉글지붕 단독주택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취득세 감면부동산 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 2.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임을 과세예고하였다.

다. 원고는 [redacted]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4. 5. 14.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취득세 118,859,860원, 지방교육세 10,933,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643,9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그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redacted]시 B 주차장 585.9㎡(이하 'B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전체를 병원 부지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B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 신축을 위해서 이 사건 토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담당공무원과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12. C병원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B 토지를 매입하여 그 전체를 병원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B 토지 소유자와의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매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3. 6. 4.에 이르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2. 12. 13. D건설과 사이에 나무 이식 및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건설은 2012. 12. 31. 위 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완료한 다음 병원 신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기 위하여, 2013. 7. 20. 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도서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측 담당공무원과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협의 중에 있다.

5)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병원 신축을 위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착공 신고 등이 되어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신축하려는 병원 건물은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공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C병원 건립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그 규모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전까지 B 토지 매입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3. 6.경에야 B 토지를 매수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토지 취득 전부터 알 수 있었던 사정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3. 7.경에서야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제시한 추진계획안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장애사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임재남

판사 이미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